

■ 논 단

검정고무신 사건과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641(본소), 2025다217642(반소)
판결 평석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전 재 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요 약 문

본 연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검정고무신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가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은 계약 상대방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작가들이 해당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계약 해지 법리는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신뢰관계 파괴 없이 불공정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을 수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약 무효 및 취소, 사정변경의 원칙 등도 계약 체결 이후 저작물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 계약의 수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한 독일의 정당보상청구권과 공정 조항, 프랑스의 비례보상 원칙 및 계약 재조정 청구권, 그리고 이를 의무화한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의 주요 내용과 해석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는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도입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 시급성 측면과 산업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권리의 발생과 소멸 등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제도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서면 계약 의무화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기간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내용이 불분명한 구두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여 저작자의 불공정 계약 체결

* 본 논문은 저자의 개인 견해에 따른 것이며, 소속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 방지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괄적·종국적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검정고무신, 정당보상청구권, 추가보상청구권, 저작권 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

— <目 次> —

I. 서론	4. 국내 입법 동향
II. ‘검정고무신’ 사건의 주요 쟁점	5. 소결
1. 사실관계	IV.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시 고려할 사항
2. 법원의 판단	1. 헌법 체계와의 조화
3. 판례에 대한 검토	2. 도입 분야의 선정
4. 시사점	3. 권리 내용의 구성
III. 주요국의 입법례 및 국내 입법 동향	4. 정보 제공 청구
1. 독일	5. 대체 수단의 모색
2. 프랑스	V. 결론 및 제언
3. E U	

I. 서론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이 이슈가 되었던 ‘검정고무신’ 사건 항소심이 2025년 8월 선고되었고, 2026년 1월 8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¹⁾ 항소심에서는 검정고무신 작가들의 계약 해지 이후 출판사 측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와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추가로 인정되었고 작가들의 상계 항변 등이 받아들여짐으로써, 1심 결과와 달리 출판사측이 작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받기까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현행 제도가 저작자 보호에 실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2020년대 들어 구름빵 사건, 오징어 게임 이슈 등을 계기로 저작권 계약 수정과 창작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²⁾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지난 2025년 6월 국회에

1)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3나2056379(본소), 2023나2056386(반소) 판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9가합579315(본소), 2020가합564098(반소) 판결.

서 진행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³⁾"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정고무신 사건은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자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구름뽕 사건'을 비롯하여 공모전의 저작권 귀속 문제,⁴⁾ 가수 조용필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양도 사례⁵⁾ 등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불공정성 논란은 끈임 없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질 계약(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⁶⁾, 그리고 저작물의 특성상 계약 당시에는 장래 수익 규모를 예측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창작자는 상품화하거나 유통할 자본, 사업수단, 또는 유통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에 비해 협상력 측면에서 불리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⁷⁾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계약 교섭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위험이 한층 커지고 있다.⁸⁾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현행 저작권 계약 영역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고 민법 제10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온전히 관철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의 불균형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이라고 불리는 영국 앤 여왕법(Statute of Anne, 1710)이 제정된 18세기에도 존재하였다. 유통망과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출판업자들에 비해 저작자는 열위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장래의 불확실한 성공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입법화한 것이 영국 앤 여왕법의 권리복귀권(reversion right)이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도 저작자들은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넘길 때 일회성 대가만을 수령하여,⁹⁾ 이후 저작물이 인기를 얻어도 저작자들은 그에 대한 해

2) 중앙일보, "[Law談-강태욱] 오징어 게임, 구름뽕, 추가보상청구권", 2021.10.18.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5690>>, (2025.10.14. 방문).

3) 국회의원 정책자료,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 2025.6.30. 개최,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8244>, (2025.11.3. 방문).

4) 한국일보, "'저작권 안 주면 수상취소' 학생들 올리는 기업의 공모전 갑질", 2020.8.12.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211030002138>>, (2025.10.14. 방문).

5) 연합뉴스, "조용필 30여 명곡 저작권 다른 사람이 소유", 2013.4.18.자, <<https://www.yna.co.kr/view/AKR20130418196100005>>, (2025.10.14. 방문).

6) 특히 웹툰 분야의 경우 2022년 실시한 웹툰 산업의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58.9%가 불공정 계약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제웅,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NARS 현황분석」 제295호(2023), 1면,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85>>, (2026.1.19. 방문)).

7) 안효철 외 4인, 「저작권 계약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1면.

8) 같은 취지로 Olivier alexandrea *et al.*, "The Digital Age and Crisis: The Challenges Facing Culture", *Note du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n°70, 2022, p.8-9.

택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앤 여왕법은 저작물에 우선 14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되, 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저작자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면 서적을 인쇄하거나 사본을 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the sole right of printing or disposing of copies)가 저작자에게 복귀하도록 한 후 추가로 14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해 주었다.¹⁰⁾ 이러한 제도를 둔 취지는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넘긴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 자신에게 복귀된 권리를 활용하여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출판업자와 새롭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¹¹⁾ 해당 조문은 1814년 문학 저작권법(Literary Copyright Act)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으나,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에 이러한 저작자 보호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저작자가 이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처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계 각국이 저작권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국가들은 저작권 계약에서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¹²⁾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불공정 계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 기존 법안들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에 본 글은 ‘검점고무신’ 판례 분석을 통해 저작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가 지닌 한계를 살펴본 후(II),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인 정당보상청구권 및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를 의무화한 EU 지침의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과 함께 2020년 이후 국내 입법 동향을 검토한다(III). 특히,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례 및 규정에 대한 해석례를 검토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한다(IV).

9) Lionel Bently & Jane C. Ginsburg, ““The sole right... shall return to the authors”: anglo-american authors’s reversion rights from the statute of anne to contemporary u.s. copyright”,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25, 2010, p.1478.

10) Statute of anne, XI. Provided always,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aid term of fourteen years, the sole right of printing or disposing of copies shall return to the authors thereof, if they are then living, for another term of fourteen years.

11) Lionel & Jane, *supra* note 9, p.1479.

12) 앤 여왕법 규정과 저작자 보호에 대한 문제 의식은 1787년 미국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일정한 기간(limited times) 동안 확보’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Art. I, §8, cl. 8), 여기서 기간을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앤 여왕법의 규정과 맥을 같이 하였으며, 이는 종결권 제도로 확장되었다(자세한 내용은 Lionel & Jane, *supra* note 9, p.1549~1550;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49집(2015), 675면(주9) 참조).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저작권법 제정 초기부터 계약상 약자의 지위에 놓인 저작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하였다(입법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 참조).

13) 중앙일보, “분쟁 끊이지 않을 것”...창작자 추가보상청구권에 쏟아진 우려, 2023.4.27.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510>>, (2025.12.3. 방문); IT조선, “창작자 추가보상권” 저작권법 개정안 임박... OTT업계는 우려”, 2022.11.29.자,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112801738>>, (2025.12.3. 방문).

II. ‘검정고무신’ 사건의 주요 쟁점

대상 판결은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들이 출판사와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판사가 작가들에게 제기한 본소와 이에 대해 작가들이 출판사에게 제기한 반소로 구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나, 이 글은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의 수정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⁴⁾

1. 사실관계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된 저작물로 저작자는 원고를 쓴 X, 그리고 그림을 그린 망 Y(소송 중 사망, 이하 ‘망’ 생략),¹⁵⁾ 그리고 그림 중 일부를 그린 Z이다. X·Y·Z는 2008년 6월 26일 A와 사업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7월 15일 Y·Z는 A와 ‘검정고무신’ 작품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A를 통해 진행하고 개인적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3배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

[표1] 사업권설정 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사업권의 정의)	
가.	사업권이라 함은 검정고무신 작가들, 원고 A가 가지고 있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함한다.
나.	본 사업권에 대하여 원고 A 또는 원고 A가 지정한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협의하여 분배한다.
다.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원고 A에게 위임한다
제2조(사업권의 설정)	
가.	본 사업권에 대하여 발생한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검정고무신 작가들과 원고 A에게 분배한다.
나.	검정고무신 작가들이 검정고무신의 원작을 활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책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우선권을 가지며 원고 A가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 원고 A는 원고 A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대행한다.
다.	원고 A는 검정고무신 작가들과의 출판계약에서 원고 A의 출판사에서 발생한 인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원저작자 지분에 관계없이 전액 해당 작가에게 지불한다.
제3조(이차적 사용)	
가.	본 사업권에 대한 이차적 권리(연극, 뮤지컬, 연재, 개작, 번역, 영화, 캐릭터, 방송, 녹음,

14)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므로, 항소심까지의 법원 판단을 정리하기로 한다.

15) Y의 소송수계인으로 상속인이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CD, 디지털형태, DVD, 모바일, 인터넷 등)를 가지며 이에 따라 파생된 수익은 제반비용 및 대행수수료 30%를 제외한 순수익을 원저작자 지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한다.

나. 애니메이션에서 발생한 원저작자 지분에 대한 수익배분은 애니메이션의 계약서에 의해 지분에 따라 분배하며 원고 A는 일체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Y·Z는 A 동의 없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검정고무신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하여 ‘하얀고무신’, ‘한국만화 1990-아버지의 마음’ 등을 출판하거나 웹사이트에 연재하였다. 이에 A는 Y·Z를 상대로 사업권설정계약과 양도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는데, Y·Z는 A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¹⁶⁾

[표2] A가 제기한 본소에서 Y·Z의 주장

가. Y·Z의 창작 및 출판 등의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1) 사업권설정계약에는 Y·Z이 별개로 만화를 창작·출판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양도각서는 사업권설정계약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

나. 사업권설정계약과 양도각서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에 해당

- 1) 사업권설정계약에 따르면 2차적 사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 중 55.2%를 A가 취득하고(Y는 18.7%, Z는 7%), 애니메이션 제작에 따른 수익도 A가 55.17% 취득(Y는 0.51%, Z는 0.19%)하여 현저히 불공정함
- 2) Y·Z는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A의 말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에 이른 것임
- 3)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가 ‘장래 검정고무신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하여 창작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고 제3자를 통한 출판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면, 예술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게 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함

다. (항소심)¹⁷⁾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제1호·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또한 Y·Z는 A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출판사 B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A·B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6)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인 X도 원고에 해당하나, X가 제조한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 부분이 아니므로 A에 한정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7) 항소심에서 주장한 것을 말한다.

[표3] Y·Z의 반소 및 이에 대한 A·B 주장의 주요 내용

반소 주요 내용	반소에 대한 A·B의 주장
○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Y·Z는 2018.11.26. (사업권설정계약), 2019.10.20.(양도각서)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됨 - 계약 및 양도각서 효력 부존재 확인	○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X는 하지 않았으므로 해지되지 않음(민법 제547조 제1항)¹⁸⁾

2. 법원의 판단

가.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 범위의 제한적 해석

Y·Z는 A와 체결한 사업권설정계약과 양도각서는 ‘Y·Z가 검정고무신 만화와 별개로 만화를 창작·출판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계약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Y·Z가 해당 계약과 별개로 검정고무신 만화를 창작하여 출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Y·Z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권설정계약서 제1조는 ‘사업권’에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도각서’는 사업권설정계약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따라 Y·Z가 A와 협의없이 검정고무신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를 창작하여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연재한 행위는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가 무효인지 여부

Y·Z는 A와 체결한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며 민법 제103조, 제104조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민법 제103조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기존에 형성된 법리에 따라 권리 의무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인지 여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등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경제력 차이로 우월한 지위의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등을 지우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¹⁹⁾ 그러나 ①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권 내용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보기

18)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9)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는 어려운 점, ② 계약 내용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방법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며 Y·Z로 하여금 창작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 점, ③ 계약을 체결하면서 A와 B가 Y·Z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분 비율상 A가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는 것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⑤ 계약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향후 신의칙에 따른 해지를 인정하는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절 가능하므로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 공박·경술·무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관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는데,²⁰⁾ Y·Z는 2004년경에도 한국방송공사 등과 TV 애니메이션 3기에 관한 공동제작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술·무경험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A에게 이러한 경술·무경험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약의)가 없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Y·Z가 주장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해당 여부에 대해서,²¹⁾ 법원은 제1호의 경우 A가 우월한 지위에서 Y·Z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2호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5호의 경우 이 사건 양도 각서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양도 각서 작성시 A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A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Y·Z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거래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의 해지 여부

사업권설정계약 및 양도각서의 무효와 더불어 Y와 Z는 A·B와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다. A가 현저하게 불리한 수익분배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20)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5784 판결.

21)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산 과정 역시 불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A가 Y와 Z의 부모를 고소하는 등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사업권 설정계약의 경우 2018년 11월 26일, 양도 각서의 경우 2019년 10월 2일 하였는데, 각 의사표시는 A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 건 계약의 법적 성질을 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 보며,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수익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Y·Z와 수익분배 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시기 또한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으므로, Y·Z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본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판례에 대한 검토

가. 계약 범위 해석에 대한 검토

계약에 대한 해석은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²²⁾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표시된 문언을 바탕으로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한다.²³⁾ 다만, 법원은 저작권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²⁴⁾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를 해석할 때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의 균형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⁵⁾ 이러한 계약 해석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를 위하여(*in dubio pro auctore*)”라는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²⁶⁾ 저작권 계약에 있어서 저작자를 보호하는 1차적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2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2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2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2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26) 이러한 일반 해석 원칙은 독일의 “목적양도론”, 미국의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presumption against the author)” 또는 “권리부여의 제한적 해석 원칙(Grant should be narrowly construed)”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다면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대상 판결의 경우에도 Y·Z가 계약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서에 표시된 문언, 변론 취지 등을 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각건대,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계약 목적과 계약서 문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계약서 문언상 해당 계약의 목적은 검정고무신 만화와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의 독점권은 A에게 부여된다는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만약 Y·Z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별개로 만화를 창작하여 출판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사업에 대한 독점권 부여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판례의 결정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본 사업권에 대한 이차적 권리(연극, 뮤지컬 등 생략)를 가지며’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A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때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기존 법원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계약 무효 판단에 대한 검토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 다수의 저작자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의 무효, 취소와 같은 법리를 주장하곤 한다. 구름빵 사건에서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며,²⁷⁾ 조용필 사건에서는 무효와 착오 의사표시에 따른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²⁸⁾ 다만 대부분의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기 어렵다.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관행, 협상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를 계약에 대한 자유로운 합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 이후 저작물이 흥행에 성공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사후에 계약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²⁹⁾ 사후에 발생한 시장변화나 저작물의 성공을 고려할 여지가 제한적이다. 또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민법 제104조의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의 어려움도 있다.³⁰⁾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는 사회적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내용 통제 규정으로,³¹⁾ 사

2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7816 판결.

2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

29)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판결.

30)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65 판결.

31) 이은영,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서 사적자치에 대한 규제”, 법학연구 제52집(2017), 189면.

적자치 원칙의 관점에서 판례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한다.³²⁾ 대상 판결의 경우도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104조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Y·Z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021년 ‘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³³⁾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동조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이를 조사·심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예정한 규정일 뿐, 개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해당 조항의 성격과 기능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103조의 판단과 동일한 사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³⁴⁾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라는 동 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사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³⁵⁾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동 법 시행령 별표1에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나, 예술인권리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완화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³⁶⁾ 만약, 이를 동일

32) 판례는 민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자에 따라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제103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알고도 종교법인이 주지를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명행위가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법 제104조의 경우도 상대방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폭리행위의 악의를 요구하거나(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5784 판결 등), 자초한 곤궁을 공박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는(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등 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33)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유 참조.

34) 판례는 민법 제103조 판단과 동일하게 ‘양도각서에 기한이 제한되지 않은 점, 계약 체결시 A가 Y·Z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점’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35)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의안번호: 2100043, 제안일자: 2020. 6. 1.)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참조.

36)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건이 문제되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작가와 출판사 간에 체결된 양도각서가 ‘A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Y·Z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과 상반된 결정을 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문제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2023.7.17.자,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345&pMenuCD=0302010000&pCurrentPage=1&pAction=&pCntPerPage=10&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A%B2>

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에서 해당 조항은 무의미해지고, 원시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등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해석과 별개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 보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와 같이 간접강제 형태로 의무가 부과될 뿐이며,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 부과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A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한계가 문제된 바 있다.³⁷⁾

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속적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으로,³⁸⁾ 계약 당사자 간 계약 존속과 신뢰 보호의 문제가 두드러진다.³⁹⁾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와 계약 기간만큼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약화될 경우 이러한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도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⁴⁰⁾ 여기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행위를 의미한다.⁴¹⁾ 대상 판결도 A가 Y·Z와 수익분배 조건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지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Y와 Y의 부모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뢰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것으로 보아 해지를 인정하였다. 생각건대, A의 행위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Y·Z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향후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만큼 판례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 판결과 달리 계속적 계약이 아닌 경우이거나, 신뢰 파괴 행위는 없지만 계약 이후 발생한 불균형으로 계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도 장래에만 미치므로 불공정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법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³⁷⁾ 연합뉴스, “‘검정고무신’ 작가 부인 “형설엔, 문체부 시정명령에 무대응””, 2023.10.10.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0153500005>>, (2025.12.5. 방문).

³⁸⁾ 장보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위”, 저스티스 제158-1호(2017), 272면.

³⁹⁾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2011), 237면.

⁴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⁴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한편, 대상 판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쟁점이지만,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 계약 이후 저작물 가치가 급상승하여 원 계약이 불공정하게 되는 경우에⁴²⁾,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리로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³⁾ 그러나 계약 이후 가치 급상승을 이유로 사정변경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회의적이다. 사정변경 원칙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핵심은 ‘계약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 원칙의 법적 효과로 계약의 해제, 해지와 같이 계약을 해소하여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된다.⁴⁴⁾ 다만,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저작물 가치의 급등이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저작물이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저작자로서는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하나 이를 감수함으로써 현재의 확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의 입장에서 향후 저작물의 가치가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위험성이 있으나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저작권 계약에 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의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가 변동의 경우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만한 본질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⁵⁾ 더욱이, 이러한 계약이 특정적, 일시적 급부로 완결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의 구속력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더 낮아진다.⁴⁶⁾ 판례의 경우도 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 종결 이후 당사자들은 그 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만약 이후 사정을 이유로 과거 계약 효력을 다시 다룰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2)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이 논란이 된 경우는 계약 이후 해당 저작물의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에 다수 발생하며, 구름빵 사건의 경우도 세간에 공분을 불러일으킨 계기는 해당 작품이 4,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도 작가에게 1,85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기사가 게재된 이후였다.

43) 계속적 계약관계의 사후적 조정도 사정변경원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계속적 계약관계는 계약체결의 동기 등 기타의 사정까지도 광범위하게 고려하므로 사정변경 법리와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 개정안 등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양창수, 「민법주해[1]」 제2판, 박영사, 2022, 254면;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4면 참조).

44) 사정변경 원칙의 법적 효과로서 계약관계를 해제 및 해지를 통해 해소하지는 주장은 권윤직(「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93~94면), 계약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계약을 유지시키되 어려운 경우 최후 수단으로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의 효과를 발생시키자는 주장으로는 백태승(「민법의 쟁점연구(I)」, 법문사, 2007, 39면) 참조.

4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46) 같은 견해로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241면 참조.

4. 시사점

대상 판결에서는 Y·Z가 주장한 계약의 축소 해석과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A의 의무 위반행위 등 신뢰 파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달리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거래 상대방의 의무 위반행위 등이 없는 경우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을 사후에 수정하기 어렵다.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구속력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저작자가 체결한 계약이 과연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의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저작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계약을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저작권 계약 수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중 하나인 추가보상청구권과 정당보상청구권을 도입한 독일, 프랑스의 입법 연혁, 주요 내용 및 해석례와 EU의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이하 DSM 지침)’ 중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2020년 이후 국내 입법 동향도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III. 주요국의 입법례 및 국내 입법 동향

1. 독 일

가. 연 혁

독일은 저작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1965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부터 이른바 ‘베스트셀러 조항(36조)⁴⁷⁾’을 두어 저작자의 저작물이 예상치 못하게 큰 성공을 거둔 특별한 경우 저작자에게 적절한 참여(수익 배분)를 보장하였다.⁴⁸⁾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입법 배경에 따르면, 당시 젊거나 무명인 저작자는 경제적 궁핍 상황에 있거나 법적 무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저작

47) 제36조(저작자의 참여) ① 저작자가 타인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는 조건이, 저작자와 그 상대방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보수가 저작물 이용 수익과 중대한 불균형(groben Mißverhältnis)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상대방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자에게 적절한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계약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청구권은 저작자가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시효로 소멸하며, 이 사정이 발생한 때부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후에 시효로 소멸한다. ③ 이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기대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다.

48) 안효질, “독일 저작권법상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 안암법학 제69호(2024), 476면.

물 이용권을 매우 낮은 대가만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한다.⁴⁹⁾ 한편, 당시 프랑스 저작권법 제35조와 같이 저작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저작자가 미래의 수익 배분 대신 일시불로 확정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프랑스 저작권법과 같은 방식은 도입 되지 않았다.⁵⁰⁾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불균형(grobes Mißverhältnis)’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현저한 불균형(auffälligen Mißverhältnis)’이었는데,⁵¹⁾ 이는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이용권자로 하여금 계약 시점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최종적인 경제적 부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고,⁵²⁾ 최종적으로는 ‘중대한 불균형(grobes Mißverhältnis)’으로 제정되었다.⁵³⁾ 그러나 동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실질적인 저작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독일은 2002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제32조에 정당보상청구권을 도입하였고,⁵⁴⁾ 기존 베스트셀러 조항은 제32a조로 개편하여 저작자 추가 참여권(추가보상청구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였다.⁵⁵⁾ 제32조와 제32a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제32조는 저작자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허락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반면 제32a조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저작자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auffälligen Missverhältnis)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적절한 배분을 보장하는 계약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2002년 저작권법 제32a조의 특징은 1965년 저작권법에 비하여 저작자가 사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중대한 불균형’에서 ‘현저한 불균형’으로 완화되었다는 점, 이러한 권리는 상대방(이용권자)이 해당

49) BT-Drs. IV/270, S. 57-58.

50) *Ibid*

51) 당시 독일 민법 제138조 제2항은 폭리 행위(Wucher)를 무효로 규정(우리 민법 제104조와 유사한 조항)하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저한 불균형(auffälligen Mißverhältnis)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저작권법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Mißverhältnis은 Missverhältnis의 구식철자법이다.

52) BT-Drs. IV/270, *op cit.* (주 49).

53) 독일 연방의회 법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계약 기초의 소멸 이론의 특별한 적용 사례라는 점이 좀 더 드러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며, 중대한 불균형(grobes Mißverhältnis) 요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BT-Drs. IV/3401, S. 5) 한편, ‘중대한 불균형’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은 아니며, 1961년에 제정된 토지거래법(Grundstücksverkehrsgesetz, GrdstVG)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농지 등의 거래시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과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4) 원문은 적절한 보상(angemessenen Vergütung)이고, 정의 관념이 가미된 ‘정당한 보상’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국내 입법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용어로 자주 논의되므로, 본 글에서는 ‘정당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55) 제32a조를 공정조항(Fairnessausgleich)이라고도 한다.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이용허락했을 때 제3자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저작자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저작자에게 계약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02년 개정법 또한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창작자의 보상청구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이용자에 대한 창작자의 구조적 열위로 인해 매절계약과 블랙리스트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개별계약법적 또는 단체계약법적 절차를 통해 창작자가 이용자의 수익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⁵⁶⁾ 2016년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2조 정당 보상의 고려 요소로서 '빈도와 범위'를 추가하였다. 둘째, 제32d조와 제32e조를 신설하여 저작자에게 자신의 계약 상대방에게(이용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저작물 사용현황과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셋째, 제36c조를 신설하여 공동보상 규칙에 위반되는 개별 계약 조항이 있을 경우 저작자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9년 DSM 지침 준수를 위해 2021년 저작권법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를 반영하여, 제32a조의 경우 '현저한 불균형(auffälligen Missverhältnis)'이라는 표현이 '비례적으로 낮은 보상(unverhältnismäßig niedrig)'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나. 주요 내용

독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의 핵심은 2002년에 도입된 제32조(정당보상청구권)와 1965년 최초 도입된 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된 제32a조(추가보상청구권, 공정조항)이다.

제32조는 저작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한 경우 계약상 합의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저작자가 이용자(출판사, 제작사 등)와 계약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만약,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적절한 보상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의 적절한 보상(정당한 보상)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용의 종류와 범위, 이용기간과 시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상응한 것'을 의미한다(제32조 제2항). 다만, 정당한 보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자 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단체 또는 개별 이용자가 공동보상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제36조),⁵⁷⁾ 이에 따라 산정된 보상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제32조

56) 안효질, 앞의 논문, 477면.

57)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단체)간에 체결하고 조합원에게 한하여 영향이 미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라

제3항). 또한, 계약 상대방은 해당 조항에 반하여 저작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32조 제3항), 계약으로 해당 규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제32조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해석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Talking to Addison” 사건이 있는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⁵⁸⁾ 원고는 번역가로 2001년 출판사인 피고와 제니콜건의 소설 “Talking to Addison”과 바버라 클레버리가 쓴 “The Last Kashmiri Rose”를 번역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 내용은 번역가가 출판사에게 번역물에 대한 이용권을 광범위하고 기간 제한 없이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시불을 지급받으며,⁵⁹⁾ 추가 보수는 양장본(hardcover)의 경우 3만 부 이상, 페이퍼백은 15만 부 이상 판매될 때 낮은 비율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⁶⁰⁾ 이에 원고는 합의된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계약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당시 업계 보수 관행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보수 관행을 주장하나 그 관행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해당 관행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시불 보상 약정은 허용되지만, 그 보상액이 매출에 따른 로열티 배분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저작자에게 부당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독일어 문학 작가를 위한 공동 보상 규칙”을 참고한 후, 번역물은 저자와 달리 창작적 기여가 더 낮으므로 양장본의 경우 저자 로열티의 1/5 정도가 번역가에게 지급되어야 하며(양장본은 소매가격의 2%, 페이퍼백은 소매가격의 1%), 추가 보수의 경우 5,000부 초과를 기준으로 양장본은 소매가격의 0.8%, 페이퍼백은 소매가격의 0.4%가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당한 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한 다른 공동 보상 규칙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 판단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정당한 보상’은 단체협상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고, 단체협상은 없으나 공동 보상 규칙이 있다면 해당 규칙에 따르며, 공동 보상 규칙이 없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유사한 다른 공동 보상 규칙도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제32a조는 저작자가 타인에게 이용권을 설정할 때, 계약 당시에 약정한 보상이 적절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비추어 저작자가 받은 보상이 비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변경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요건인 ‘비례적으로 낮은 보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DSM 지침 이행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기존의 ‘현저한 불균형’보다 완화된 것이

면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8) BGH, ZUM 2010, 48, - “Talking to Addison”.

59) “Talking to Addison”의 경우 페이지당 30마르크, “The Last Kashmiri Rose”의 경우 페이지당 28마르크를 받았다.

60) 양장본의 경우 소매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를 받고, 페이퍼백의 경우 표준 페이지 단가의 50%에 해당하는 정액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다.⁶¹⁾ 한편, 제32a조 단서 규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수익이나 이익의 규모를 사전에 예상했는지 또는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권리 행사 요건에서 예측가능성 요건을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1965년 제36조의 베스트셀러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대법원이 예상치 못한(unerwartet) 불균형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도가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이다.⁶²⁾ 또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방에게 저작물 이용 범위와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이익에 대한 정보 및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⁶³⁾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이름과 주소)는 저작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저작자가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부수적인 기여만을 하였거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비례하지 않은 경우(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이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2021년 개정 전의 제32a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영화 “Das Boot” 사건이 있다.⁶⁴⁾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촬영감독으로 영화제작사(Barvaria Film)와 계약을 체결하며 총 204,000 마르크를 받았고, 영화에 대한 이용권을 영화제작사에게 포괄적, 무기한으로 양도했다. 그런데 이후 Das Boot는 극장용 영화, TV 시리즈 등 여러 버전으로 국내외에서 상영되었고, 1997년에는 Director's cut 버전이 추가 제작되는 등 상업적으로 흥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영화제작사, 영화제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방송한 방송사, DVD 배급사를 상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하고, 장래 이용분에 대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32a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보수는 노무대가와 사용료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고려해야 하며, 피고들이 얻은 수익은 전부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용자, 이용 형태별로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보수는 단체협약·공동 보수 규정을 참고할 수 있고, 전체 제작비 중 카메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불균형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받

61) 조희경,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6권 제1호 (2025), 130면.

62) BT-Drs. 14/8058, S. 19.

63) 이러한 정보제공청구권은 정당보상청구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Dreier&Schulze, *Urheberrechtsgesetz* 8. Auflage, C.H.Beck, 2025, Rn. 85).

64) Das Boot 사건은 3개가 있다. 먼저, 2008년에 제기된 사건은 촬영감독이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수익 정보 제공을 청구한 사건이고(BGH, ZUM-RD 2012, 192, -“Das Boot”-), 2016년에 제기된 사건은 영화제작사, WDR (서부독일방송) 등을 상대로 추가보상청구를 한 사건이며(BGH, GRUR 2021, 955, -“Das Boot III”-), 2017년에 제기된 사건은 WDR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8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다(BGH, GRUR 2020, 611, -“Das Boot II”-).

은 보상이 다 소진되고 그 이후 피고가 추가로 얻은 수익이 쌓이면서 격차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현저한 불균형’인지 여부는 단체협약·공동보수 규정을 참고할 수 있고, 저작자가 받은 수익은 포괄적으로 고려되며, 이용자가 얻은 수익은 개별 이용자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청구권은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65년 베스트셀러 조항에는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으나,⁶⁵⁾ 2002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은 채권법 현대화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에 따라 규율되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되었다.⁶⁶⁾ 따라서 독일 민법 제195조와 제199조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⁶⁷⁾

2. 프랑스

가. 연 혁

프랑스는 1957년 저작권법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 저작물의 판매 또는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5조).⁶⁸⁾ 그리고 비례적으로 로열티 일부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액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해당 보상이 저작자의 불충분한 예측 또는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7/12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계약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제37조). 이러한 규정들은 1992년 여러 지적 재산 법률이 단일 법전인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으로 통합되면서 그대로 유지되었다가(L131-4조, L131-5조) DSM 지침이 제정되면서 일부 변경되었다.⁶⁹⁾ 프랑스는 2021년 DSM 지침 이행을 위해 L131-5조를 개정하여 비례 보상의 경우에도 처음에 약정된 보수가 양수인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exagérément faible)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L131-5조 제2항), 저작물 이용에 대한 수입 정보를 저작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양수

65) 저작자는 중대한 불균형 상태를 안 지로부터 2년, 중대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66) BT-Drs. 14/8058, *op. cit.* (주 62).

67) 제32조 정당보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보상이 적정한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당보상청구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작자가 약정 보상이 부적정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해당 상황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Dreier&Schulze, *op. cit.* (주 63), Rn. 90-91; BGH GRUR 2016, 1291 - “Geburtstagskarawane”).

68) Loi n°57-298 du 11 mars 1957 sur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69) Loi n° 92-597 du 1er juillet 1992 relative a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인에게 부과하는 등(L131-5-1조)의 규정을 도입하였다.⁷⁰⁾ 그리고 2024년에는 L131-4조를 개정하여 “저작물의 판매 또는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보상”을 “저작물의 판매 또는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DSM 지침 제18조의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이라는 표현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규정이 2024년 뒤늦게 개정된 이유는 예술가·저작자 다분야 위원회(Comité pluridisciplinaire des artistes-auteurs et des artistes-autrices, CAAP)와 프로작가연맹(Ligue des auteurs professionnels)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이 2021년 개정된 법은 DSM 지침 제18조를 불충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⁷¹⁾

나. 주요 내용

2021년 DSM 지침의 이행으로 저작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계약에 대한 수정권을 갖는다. 먼저, L131-4조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 양수인의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수익에 비례하여 저작자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양도(cession)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 기간 동안에 저작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적인 채권행위로서 이용권의 설정과 관련된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⁷²⁾ ‘물권적 효력을 가진 권리 이전을 포함하여 채권행위로서의 이용허락(concession)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해야 한다.⁷³⁾ 그 이유는 프랑스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물권적 권리에 대한 소송으로 보고, 법문에 cession만 규정된 것과 달리 양도와 이용허락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면서 단순히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이다.⁷⁴⁾ 즉, 저작권법에는 cession만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양수인이 이전받는 권리가 양도인지, 이용허락

70) Ordonnance n° 2021-580 du 12 mai 2021 portant transposition du 6 de l'article 2 et des articles 17 à 23 de la directive 2019/790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7 avril 2019 sur le 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e marché unique numérique et modifiant les directives 96/9/CE et 2001/29/CE.

71) Con. d'État, 15 nov. 2022, n° 454477, inédit au recueil Lebon,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46565143?init=true&page=1&query=%22ligue+des+auteurs+professionnels%22&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2025.12.12. 방문); Assemblée nationale, “Question écrite n° 4166: Rémunération des artistes-auteurs”, 2023.3.7.자, <https://questions.assemblee-nationale.fr/q16/16-4166QE.htm?utm_source=chatgpt.com>, (2025.12.11. 방문).

72) 양대승, “프랑스 저작권 계약법 소고”, 계간저작권 제143호(2023), 233면; 이충훈, “영상물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민법의 관점에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2호(2023), 97면.

73) 다만, 법률상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L131-3조), 양도 이후에도 양수인에게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L131-4조 등), 여기서의 양도를 종국적인 권리 양도로 볼 수는 없으며, 배타적 이용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4) Civ. 1^{re}, 22 janv. 2009, n°07-21.498, inédit,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20182243>>, (2025.12.12. 방문).

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⁷⁵⁾ 그리고 ‘비례적 보상’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⁷⁶⁾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저작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⁷⁷⁾ 한편,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 ‘비례 보상’이라는 표현에서, 2024년 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의할 점은 그 전의 경우에도 단순히 “비례 보상”만을 정하면 L131-4조를 충족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비례 보상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에는 민법 제1169조가 적용되어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⁷⁸⁾ 이에 따라 출판 산업의 경우 2.5% 비례 보상은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영화 산업의 경우 0.5% 비례 보상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⁷⁹⁾ 이 외에 저작자가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시 비례 보상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교할 때 이러한 보상이 과도하게 낮을 때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하며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하며 공정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은 비례 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일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비례 보상 산정 기초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례 보상의 이행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계산 및 통제에 드는 비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 저작물 이용의 성질이나 조건으로 인해 비례 보상 원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 해당 법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L132-6조의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 보상이 향후 이용자가 저작물로부터 받는 예상 수익에 비해 불충분하거나, 7/12 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계약 조건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하급심 판례가 있다.⁸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Samuel Setbon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그가 만든 소프트웨어(“Eti-Therm”)의 권리를 피고 Eti-SET에게 2,500프랑에 양도(cession)하였는데, 이후 원

75) 참고로 1957년 현대적 의미의 프랑스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793년 프랑스 제1공화국 국민공회가 만든 ‘모든 장르의 저작물 저작자, 음악 작곡가, 화가 및 삽화가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Loi du 19 juillet 1793 relative aux droits de propriété des auteurs d’écrits en tout genre, des compositeurs de musique, des peintres et des dessinateurs)’ 법령(Décret)이 적용되었는데, 해당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권리 양도에 이용권 부여를 포함하여 해석한 바 있다(A.-C. Renouard, *Traité des droits d’auteur dans la littérature, les sciences et les beaux-arts*, t. II, J. Renouard, Paris, 1839, P.278; Cité par A. Boisson, “Cession et licence en droit d’auteur”, *Légicom* n° 53, 2014, p.61).

76) Civ. 1^{re}, 9 oct. 1984, n°83-13.850, Bull. civ. I, n° 252.

77) Civ. 1^{re}, 13 févr. 2007, n°05-12.016, Bull. civ. I, n° 60.

78) 유상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약정한 반대급부가 실질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는 무효이다(Article 1169 Un contrat à titre onéreux est nul lorsque, au moment de sa formation, la contrepartie convenue au profit de celui qui s’engage est illusoire ou dérisoire).

79) TGI Seine, 3d ch., 16 May 1969, RIDA 1/1970, p.213; CA Paris, 1st ch., 23 November 1970, RIDA 3/1971, p.74(Cité par Dusollier et al., *Contractual Arrangements Applicable to Creators: Law and Practice of Selected Member States*, étude pour le Parlement européen, 2014, p.120).

80) CA Paris, 4e ch., 26 sept 2001; note J. Dragne, *Propriété industrielle* n°3, 2002, comm. 39.

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불충분하게 예측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재무제표를 토대로 피고 회사 매출액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는데 원고가 이를 불충분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프랑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렇게 일시 보상에 대한 계약 재조정 사례가 존재하긴 하나, 실제 법정에서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해당 조항은 비례 보상이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저작자가 계약 당시 저작물의 엄청난 성공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7/12 이상의 손해를 입증할 것을 법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다.⁸¹⁾ 한편, 이런 계약 조정 메커니즘은 DSM 지침 제20조 제1항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직접 청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⁸²⁾

이 외에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자가 이러한 보상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양수인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저작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양수인이 자신이 양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고 양수인이 해당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제3자가 저작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이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청구는 제3자에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L131-5조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며 프랑스 민법 제222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⁸³⁾

3. E U

가. 배 경

EU는 유럽 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3월 26일 DSM 지침을 제정하였다.⁸⁴⁾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021년 6월 7일까지 DSM 지

81) MarÉchal camille, "L'incidence de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sur les contrats d'exploitation des droits d'auteur", *Communication - Commerce Électronique Juin 2016*, p. 9~12.

82) 다만, 과거에 프랑스 대법원은 서브 라이선스 구조하에서 저작자가 제3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영화 감독인 원고는 자신의 영화 2편("Dupont Lajoie", "Un taxi mauve")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SOFRACIMA 제작사에게 양도했고, 해당 영화의 TV 방송권은 최종적으로 MK2(피고)에게 부여되었다. 이후 제작사가 비례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MK2를 대상으로 직접 저작권 침해 및 비례보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작사가 MK2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MK2에게 직접(action directe)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Civ. 1^{re}, 29 mai 2013, n° 12-14.041, Bull. civ. I, n° 546).

83) 채권 또는 동산에 대한 청구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 후에 소멸된다(Article 2224 Les actions personnelles ou mobilières se prescrivent par cinq ans à compter du jour où le titulaire d'un droit a connu ou aurait dû connaître les faits lui permettant de l'exercer).

84)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DSM 지침에는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제18조~제23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 사업자 간의 계약 지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⁸⁵⁾

나. 주요 내용

DSM 지침 중 저작자 및 실연자의 공정 보상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회원국은 저작자와 실연자가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이용 허락하거나 제3자에게 이 전하는 경우,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저작자와 실연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의 원칙).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자와 실연자는 그들이 이용 허락한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1회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투명성 의무). 그리고 처음에 합의된 보상이 해당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으로부터 산출된 후속 수입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경우(disproportionately low) 저작자와 실연자가 추가적이며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계약 수정 메커니즘). 여기서 수입의 불균형은 당사자들이 이를 예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며, 상품화 관련 수익, 분야의 특수성, 계약이 단체협약에 기반을 둔 것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투명성 의무와 계약 조정 메커니즘은 양수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승계한 승계인(sub-licenses)에까지 미친다.⁸⁶⁾

한편, 계약 수정 메커니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과 관련해서는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창작자는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일로부터 10년 내에 추가보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제47조).

4. 국내 입법 동향

2020년 이후 저작자 공정 보상과 관련하여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8개에 달한다.⁸⁷⁾ 해당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85) *Ibid* recital (72).

86) *Ibid* recital (76)~(78).

87) 2020년 10월 26일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4), 2020년 11월 24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1), 2021년 1월 15일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0), 2022년 8월 31일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31), 2022년 9월 19일 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7402), 2022년 11월 1일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18010), 2023년 4월 12일 조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85), 2023년 6월 21일 임오경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801).

법안들을 살펴보면, 영상저작물 분야에 한정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권리 양도 이후 정당한 또는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거나(4개 법안), 분야와 상관없이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권리를 양도한 이후 저작자가 취득한 수익과 양수인이 취득한 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당한 보상(또는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4개 법안)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보상 논의가 활발했는데, 이는 OTT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영상제작자 등에 비해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영상저작물 저작자 등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의된 모든 법안들은 저작자와 이용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법안 논의 과정 중 투자 위축, 규정 불분명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역차별 우려 등도 제기되었는데,⁸⁸⁾ 이는 해당 법안들이 국내 산업 및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소 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입법 체계에 맞추어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저작권 계약법을 지속적으로 수정·발전 시켜왔다. 양국 모두 계약 체결 시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계약 이후 발생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입법화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 요건들을 완화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청구권을 부여하여 계약 불균형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시켰고, 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 계약 수정 메커니즘은 EU DSM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에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앞서 검토한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이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기존 법제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의 입법례는 저작권 계약 수정 법리를 도입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다년간 저작권 계약 수정 관련 제도를 운영해 온 국가인 만큼,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입법 체계와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국의 입법 체계 및 저작권 환경이 국내와 상이하므로, 제도 도입 시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에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88) 한지영, “OTT 시대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 의원법률안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75호(2023), 211면~218면; 손보영, “영상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연구”, 기간 저작권 제143호(2023), 185~191면; 김혜은, “영상저작물 창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81호(2025), 406~414면.

IV.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시 고려할 사항

1. 헌법 체계와의 조화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도입 시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허용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 보호에서 도출되는 권리인만큼 그 근거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보호 원리,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을 들 수 있으나,⁸⁹⁾ 이로 인해 계약상대방 및 제3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기업 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⁹⁰⁾ 더욱이, 추가보상청구권의 경우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수익 여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권리인 만큼 계약 당사자가 이를 예측하기 쉽지 않고, 기존 법률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입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헌법적 검토를 하여 사전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만, 권리 도입 이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정당보상청구권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¹⁾ 청구인인 출판사는 연방대법원이 독일 저작권법 제32조(정당 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계약 수정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자, 해당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제32조가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제32조가 출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저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⁹²⁾ 제32조는 협상력이 약하고 소득이 낮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또한,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가 저작자에게 어려운 입증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89) 정필운 외 3인,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 - 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9, 268면.

90) 이규홍,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헌법적 관점에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2호(2023), 12~14면, 19~20면.

91) BVerfG ZUM 2014, 130 - “Vereinbarkeit eines Anspruchs auf angemessene Vergütung mit der Berufsfreiheit gemäß Art. 12 Abs. 1 GG”.

92) 이러한 기본 원칙은 독일 저작권법 제11조(저작권은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 c호(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성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고 한다.

민법 제138조(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규정은 이를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 불확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비례 원칙(과잉금지 원칙) 판단과 관련하여 제32조는 이용자에게 모든 협상 여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낮은 보수를 책정하는 등 협상력을 악용하는 것만을 예외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이고, 법원이 개별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입법부에게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비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저작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당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용자의 기본권과도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권리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이용자측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⁹³⁾

2. 도입 분야의 선정

2020년 이후 저작권 계약 수정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는 영상저작물 분야이다.⁹⁴⁾ 영상저작물 분야에서의 저작권 계약의 수정 논의는 OTT 산업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도 있으나, 현행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제100조)이 영상제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⁹⁵⁾ 다만, 영상저작물에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 과정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와 시나리오 작가뿐만 아니라 촬영·음악·미술 감독 및 실연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다. 그 중에서도 제작·감독·연출·촬영·미술 등을 담당하여 영상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이들은 이른바 ‘현대적 저작자(modern author)’로 불린다.⁹⁶⁾ 이처럼 다수의 권리자가 관여하는 영상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

93)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권리의 내용, 권리의 법적 성격, 행사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제양수인)에게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제3자는 원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같은 취지로 이규홍, “저작권법 개정안상 저작자의 추가보상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국제사법 및 실질법에 관한 쟁점”,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2023), 218~219면; 이규홍, 앞의 논문, 19~20면).

94) 이해완,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성균관법학 제35권 제3호(2023); 박경신, “창작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행 및 선례: 영상저작물 창작자포기불가보상청구권(또는 “창작자고유보상권”)”, 계간저작권 제143호(2023); 오재상·김현경,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검토”, IT와 법연구 제29집(2024); 유정주·차승재,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연구”, 영화연구 제93호(2022) 등 2020년대 들어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95) 유정주, 성일중 의원안 입법 제안 이유.

96)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499면.

하기 위해서는 권리 관계의 일률적인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저작권법 제100조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⁹⁷⁾ 그러나 문제는 권리 양도의 주체가 되는 '영상제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영상제작물 제작에 참여한 수많은 인력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저작자로 포섭하여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설령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제100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나아가 제작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라 일부만이 혜택을 누리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⁹⁸⁾

다음으로 최근 OTT 등 영상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가 법인(제작사)을 통해 제작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⁹⁹⁾ 이러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다면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영상제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으나,¹⁰⁰⁾ 하급심 판례는 영상제작물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⁰¹⁾ 또한,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제작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권리 처리 규정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상제작물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기존 국회에 발의된 영상제작물 추가보상 관련 법안들은 제100조와 관련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저작권법 제9조를 통해 회피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상제작물 분야에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 창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업무상 저작물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쉽게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하고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자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상제작물 분야에서 추가보상청구권과 같은 저작권 계약 수정 법리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¹⁰²⁾ 또한, 제도의 실효성, 형평성

97) 허희성, 「2011년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下」, 명문프리컴, 2011, 496면.

98) 촬영 보조 감독도 영상제작물 총 촬영 감독과 촬영 보조 감독 간의 지위 불균형에 따라 총 촬영 감독만이 해당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99) 특히 방송산업의 경우 스튜디오(별도 제작사)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방송영상산업 백서」, 2024, 26면).

100)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943~945면(홍승기 집필).

101) 서울고등법원 2000. 9. 26. 99라319 결정.

102) 이러한 측면에서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추가보상청구 도입 범위에서 영상제작물을 제외하였다.

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영상 저작물 분야를 제외하고 이번 검정고무신 사건이나 구름빵 사건과 같이 불공정한 계약이 문제된 출판 분야부터 도입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¹⁰³⁾ 대신 영상저작물 분야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의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¹⁰⁴⁾ 이는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양도되는 권리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이다.¹⁰⁵⁾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감독조합과 영상제작자 단체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을 활용하여 합리적 계약 관행을 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며,¹⁰⁶⁾ 독일 입법례와 같이 공동 보상 규정 등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3. 권리 내용의 구성

가. ‘불균형’ 개념의 판단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지적되는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는 불균형 개념의 추상성이다.¹⁰⁷⁾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해외 입법례에서 보듯 용어에 있어서 ‘중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지나치게 낮은 불균형’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어 왔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중대한 불균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계약 보수가 표준 인세의 20~30%도 못 미치고 수익 대비 1% 미만을 지급받았을 때 불균형을 인정하였고,¹⁰⁸⁾ “현저한 불균형”은 ‘캐리비안 해적’ 사건에서 주연 성우가 받은 보수(1편: 1,308유로, 2편 및 3편: 각 4,000유로)와 비교했을 때 영화는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불균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¹⁰⁹⁾ 따라서 불균형의 정도는 불확정 개념으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남소의 위험성이 있고, 법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

103) 출판 분야에 우선 도입될 경우 입법 대상의 차별적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계약 불균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시급성 측면에서 합리적 차별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 문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쟁점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4) 같은 의견으로 박윤석, “영상저작물특례규정과 보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法學論叢 제41권 제3호(2024), 355면.

105) 특히 입법 배경에 비추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허희성, 앞의 책, 509~510면 참조).

106) 같은 의견으로 박성호,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제510호(2022), 49면.

107) 김인철, “추가보상청구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2호(2023), 51면(주49).

108) BGH NJW 1991, S. 3150.

109) BGH ZUM 2013, S. 39.

가 있으므로 시행령에 세부 판단 기준을 정하거나,¹¹⁰⁾ DSM 지침 제21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분쟁 발생 시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DR)을 통해 ‘불균형’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나. 권리의 법적 성격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포기 가능 여부, 권리 행사 시기(기한), 제3자(재양수인)에 대한 행사 가능 여부, 현저한 불균형에 대한 사전 인지(또는 인지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 발의된 법률들을 살펴보면서 논의하기로 한다.¹¹¹⁾

[표4] 법안별 권리 주요 내용

구 분 ¹¹²⁾	사전 포기 여부	행사 시기의 제한	행사 대상 (제3자 포함여부)	예측불가능성 필요 여부	소급 적용 여부
노웅래(안)	X	미규정	○	X	X
도종환(안)	X	양도된 날부터 10년	○	미규정	X
이용호(안)	X (사후 포기 및 양도도 불가)	양도된 날부터 10년	○	미규정	X
조수진(안)	미규정	미규정	○	미규정	X

위 법안들은 모두 저작재산권 양도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간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¹¹³⁾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보상과 추가보상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 포기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법안은 사전 포기가 되지 않는 권리로 설계하였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청구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독일 입법례와 같이 강제집행의 대상에

110) 구체적인 기준으로 DSM 지침의 recital (78)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할 만한다. 그 예로 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수익을 고려할 것, ② 저작자의 기여도 및 해당 저작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등이 있다.

111)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추가보상청구권만을 도입하고자 하는 법안은 제외하였다. 이는 영상저작물 양도 추정 규정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12) 발의일과 의안번호는 주 87 참조.

113) 노웅래 의원안의 경우는 이용 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서 제외되는지 여부¹¹⁴⁾,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사 시기의 제한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저작권이 양도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고,¹¹⁵⁾ 둘째는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법안이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날로부터 10년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은 거래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현저한 불균형 상태가 양도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면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도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orsche 911과 관련된 최근 독일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¹⁶⁾ 해당 판례는 Porsche 911 개발에 참여한 자의 상속인이 제32a조에 따른 청구권을 주장한 사건으로, 법원은 상속인도 제32a조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 모두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각건대, 이러한 청구권은 저작자 계약 이후 발생한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권리로서, 특정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저작권 존속기간 내라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며,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기간 도과 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양수인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재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제3자에게 재양도된 이후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작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적절한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입법한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권리(상대권)로 제3자에게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수인과 재양수인 모두에게 이중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재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양수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거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제3자에게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계약 당시 이러한 불균형을 예측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약 이후 발생한 불균형, 즉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청구를 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하지 않으면, 민법 제2조

114) 제32a조 제3항.

11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페인 지식재산권법 제47조와 같이 행사 기간을 양도일로부터 10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행사 기간과 관련하여 이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이영욱, “저작권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호(2015), 104면 참조.

116) BGH, ZUM 2022, S. 547.

신의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요건과 동일하게 예측가능성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이러한 측면에서 2002년 제32a조를 입법하면서 계약 당사자들이 달성된 수익이나 이익의 규모를 예상했는지 또는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¹¹⁷⁾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기존 법률관계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기존 법률관계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기존 법률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정보 제공 청구

청구권의 실효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파악해야 하므로, 양수인 또는 이용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4개 법안 중 조수진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양수인(재양수인 포함)에게 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정보 제공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노동래 의원안에만 규정되어 있다.¹¹⁸⁾ 생각건대, 정보 제공 청구권은 정당보상 또는 추가보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청구권이 도입된다면 반드시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제공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수인에게 매출 정보 등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는 매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¹¹⁹⁾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콘텐츠 소비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향후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투자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¹²⁰⁾ 따라서 해당 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제공 청구가 남용될 경우 이용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5. 대체 수단의 모색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과 같은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는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앞서 살펴본 다양한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117) BT-Drs. 14/8058, *op. cit.* (주 62).

118)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19)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박정훈, “저작권 계약의 해석과 최근 입법 동향”, 원광법학 제37권 제4호(2021), 136면).

120) 안효질 외 4인, 앞의 책, 140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적 안정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위험 부담은 간과된 채 저작자 보호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있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저작권 계약 환경 속에서 저작자 보호가 이루어지되,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경우 대체 수단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불공정 계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구두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2항에 규정된 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를 저작권법에 도입하여 저작권 계약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¹²¹⁾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자 57.3% 중 7.7%가 여전히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지난 2018년 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²²⁾ 특히,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예술인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술인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서면계약 작성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계약 효력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저작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는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서면 작성 의무를 부과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들 수 있다.¹²³⁾ 또한, 해외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저작권 양도 시 서면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미국의 경우 제204조, 영국의 경우 제90조), 프랑스는 저작권 양도 계약뿐만 아니라 출판계약, 시청각 계약 등도 서면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L131-2조), 독일은 알려지지 않은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체결 시 서면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제31a조)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불공정 계약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예시로 배타적발행권 설정 기간과 유사하게 5년으로 한정),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복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종의 회귀권으로서 계약자유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과거 앤 여왕법처럼 해당 저작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 저작자도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도입은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이나 투자 위축 우려 등을 피하면서 저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21) 예술인복지법은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2016.5.4. 시행, 법률 제13970호) 개정 이유).

122) 문화체육관광부, 「2024 예술인 실태조사」, 2025, 28면.

123) 특히,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 규정의 취지가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불공정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행 법제도가 지닌 한계를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정당보상 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EU의 제도, 입법 연혁 및 운용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국내 입법 동향과 이러한 청구권 도입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 제도는 계약 체결 당시의 지위 불균형이나 계약 이후 발생한 현저한 가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의 정당보상청구권과 공정 조항, 프랑스의 비례보상 원칙과 계약 재조정 청구권, 그리고 EU의 DSM 지침에 담긴 계약 수정 메커니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이후 국내에서도 저작권 계약 수정과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권리를 설계함에 있어 헌법 등 국내 법체계와의 조화, 국내 저작권 산업 특성의 반영 등을 정교하게 담아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 계약 수정과 관련된 청구권을 제도화 할 경우, 도입 분야 선정부터 권리 내용 구성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는 기존에 형성된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권리의 발생과 소멸과 관련된 요건들을 명확히 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대체 수단으로 서면 계약 의무화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기간 제한의 법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내용이 불분명한 구두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여 저작자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괄적·종국적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저작자도 그 성과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며,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DSM 지침을 통해 유럽연합이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창작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자와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예술인 실태조사」, 2025.
-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 백태승, 「민법의 쟁점연구1」, 법문사, 2007.
- 안효질 외 4인, 「저작권 계약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 양창수, 「민법주해[1]」 제2판, 박영사, 2022.
-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 정필운 외 3인,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 - 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9.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방송영상산업백서」, 2024.
- 허희성, 「2011년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下」, 명문프리컴, 2011.

나. 논문

-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2011. 12).
-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49집(2015. 2).
- _____, “추가보상청구권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2호(2023. 12).
-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2).
- 김혜은, “영상저작물 창작자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81호(2025. 8).
- 박경신, “창작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행 및 선례: 영상저작물 창작자포기불가보상청구권(또는 “창작자고유보상권”)", 계간저작권 제143호(2023. 9).
- 박성호, “영상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제510호(2022. 12).

- 박윤석, “영상저작물특례규정과 보상청구권에 관한 소고”, 法學論叢 제41권 제3호(2024. 9).
- 박제웅, “만화·웹툰 산업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NARS 현황분석』 제295호(2023. 6).
- 박정훈, “저작권 계약의 해석과 최근 입법 동향”, 원광법학 제37권 제4호(2021. 12).
- 손보영, “영상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연구”, 계간 저작권 제143호(2023. 9).
- 안효질, “독일 저작권법상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 안암법학 제69호(2024. 11).
- 양대승, “프랑스 저작권 계약법 소고”, 계간저작권 제143호(2023. 9).
- 오재상·김현경,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검토”, IT와 법연구 제29집(2024. 8).
- 유정주·차승재,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연구”, 영화연구 제93호(2022. 9).
- 이규호, “저작권법 개정안상 저작자의 추가보상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국제사법 및 실질법에 관한 쟁점”,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2023. 6).
- 이규홍,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헌법적 관점에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2호(2023. 12).
- 이영욱, “저작권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6호(2015. 1).
- 이은영,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서 사적자치에 대한 규제”, 법학연구 제52집(2017. 5).
- 이충훈, “영상물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민법의 관점에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2호(2023. 12).
- 이해완,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성균관법학 제35권 제3호(2023. 9).
- 장보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위”, 저스티스 제158-1호(2017. 2).
- 조희경,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6권 제1호(2025. 2).
- 한지영, “OTT 시대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 의원법률안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75호(2023. 8).

2. 외국문헌

가. 단행본

A.-C. Renouard, *Traité des droits d'auteur dans la littérature, les sciences et les beaux-arts*, t.

II, J. Renouard, Paris, 1839.

Dreier&Schulze, *Urheberrechtsgesetz* 8. Auflage, C.H.Beck, 2025.

Dusollier et al., *Contractual Arrangements Applicable to Creators: Law and Practice of Selected Member States*, étude pour le Parlement européen, 201.

나. 논 문

Olivier alexandrea et al., "The Digital Age and Crisis:The Challenges Facing Culture", *Note du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n°70*, 2022. 2.

Lionel bently&Jane C. ginsburg, ""The sole right... shall return to the authors":anglo-american authors's reversion rights from the staute of anne to contemporary u.s. copyright",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25*, 2010. 8.

A. Boisson, "Cession et licence en droit d'auteur", *Légicom* n° 53, 2014. 2.

MarÉchal camille, "L'incidence de la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sur les contrats d'exploitation des droits d'auteur", *Communication - Commerce Électronique Juin 2016*, 2016. 6.

Abstract

A Study on the "Black Rubber Shoes" Case and Discussions on Introducing a Copyright Contract Modification Mechanism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Case Nos. 2025Da217641, 2025Da217642) and Legislative Proposals -

Jeon, Jae-Rim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resolving the issue of unfairness in copyright contracts, focusing on the case commentary of the "Black Rubber Shoes" (Geomjeonggomosin) case, which was recently finalized b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Discontinuance of Trials procedure. In this case, th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nullity of the contract based on an unfair juristic act as claimed by the authors; however, it did acknowledge the contract termination based on the de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of trust by the contracting party, thereby allowing the authors to escape the binding force of the unfair contract.

However, this legal doctrine has limitations, as it is difficult to claim termination for copyright contracts that are not "continuing contracts" or where specific acts destroying the trust relationship are absent. Furthermore, existing legal principles—such as contract nullity, rescission, and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face institutional hurdles in rectifying situations where the value of a work increases dramatically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s th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and the 'right to additional remuneration' as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It analyzes the legislative examples and core features of Germany's fairness clause (Fairnessausgleich), France's principle of proportional remuneration and right to request contract readjustment,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uthor's personal opinion and does no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and the EU's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which mandates such mechanis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for introducing a copyright contract modification system in Korea: Constitutional Harmony, Sectoral Specificity, Legal Predictability. Meanwhile, if the immediat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s difficult, this study proposed mandating written contracts or imposing term limits on the transfer of the derivative works right as alternatives. Through these measures, it is possible to prevent authors from entering into unfair contracts by blocking unclear oral contracts in advance and to limit the comprehensive and final transfer of the derivative works right.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 measures will be promptly established to secure contractual fairness while maintaining legal stability, allowing authors to get the legitimate profits arising from their creative works.

Key Words : Black Rubber Shoes, Bestseller clause, contract adjustment right for fair remuneration, Copyright contract, Unfair juristic act